

# 유학준비반 운영규정

- 제정 : 2009. 2. 23.
- 개정 : 2018. 3. 1.
- 개정 : 2019. 6. 18.
- 개정 : 2020. 9. 1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와 국외대학간의 학생교류를 위한 유학준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 대학과 국외대학간의 체결된 학술교류 협정에 따른 교류 및 수학을 위해 준비하는 학생과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국외대학과의 교류 및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
## 제 2 장 위원회 구성

**제3조(위원회)** 유학준비반에 대한 홍보와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심의는 국제협력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담당하며, 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국제협력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.  
<개정 : 2020.09.01.>

**제4조(위원장)** <삭제 : 2020.09.01.>

**제5조(간사)** <삭제 : 2020.09.01.>

## 제 3 장 유학준비반 구성

**제6조(지원자격)** 국외대학 유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(이하 “지원자”)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본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
2.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지 않은 자
3.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**제7조(모집)** 위원회의 위원은 매학기 유학준비반 편성을 위하여 학과 홍보 및 학과장 그리고 지

도교수추천 의뢰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한다.

**제8조(추천 및 수학승인)**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유학준비반 학생으로 선정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지원자와 관련부서에 통보한다.

**제9조(수강)** 유학준비반의 수학기간은 본 대학 재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되, 졸업생일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**제10조(비용)** 유학준비반 수강의 제반 비용은 본 대학이 부담하나 교재 등은 학생이 부담한다.

## 제 4 장 유학준비반 운영

**제11조(지원자 면담)** 위원회의 위원은 유학준비반 학생과 주기적으로 면담하여 학생의 결석을 사전에 방지하며 학습 효과를 높인다.

**제12조(수학허가의 취소)** 수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 대학의 학칙을 위반하거나 성적이 부진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**제13조(학점취득)** 유학준비반 학생의 성적은 수강 신청한 학사일정에 따라 부여되며, 간사는 매 학기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께 통보한다.

**제14조(준용규정)**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내규를 준용하며 그렇지 못할 시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